

「2025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수정공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 정세 속 재편되는 글로벌공급망(GVC) 대응을 위한 「2025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0월
-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제조 수출기업
- 지원규모 : 18개사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250만원
- 지원내용
 - 원부자재 수입선 다변화 지원
 - 대체 공급선 발굴 및 전환 비용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 대체(희망) 원·부자재 품목*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바우처 형식 지원으로 기업의 자유도 확장
 - 선정기업 당 지원금액(1개사 250만원) 내 자유롭게 바우처 형식으로 사업 진행(지원기업 비용 先지출, 관련 자료 제출 증빙 後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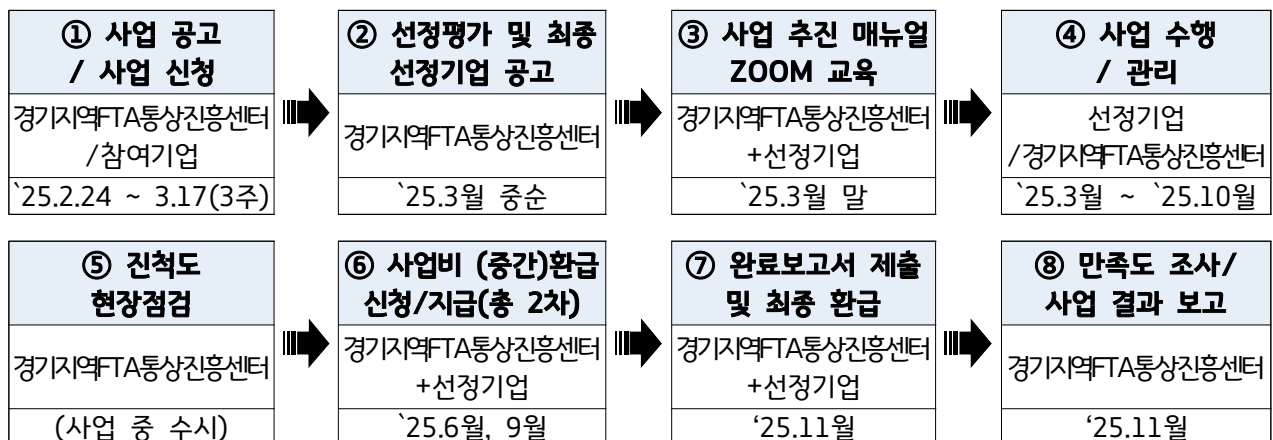
<대체(희망) 원·부자재 품목>

- 대체(희망) 원·부자재 품목은 기업의 수출제품 제조에 필요한 기존 원·부자재 대안책 구축을 목표로 대상 선정하되,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 예) 수입 후 국내 가공 없이 바로 수출되는 소비재 또는 사치품 등은 제외
- 사업신청 시 선정한 원·부자재 품목 대상으로 사업 진행이 원칙
- 사업진행 중 부득이 대상 품목 변경 필요 시 변경신청서 제출 후 승인 득해야 변경 가능

○ 지원항목

연번	세부 항목		소요비용
1	[필수]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지원사업 ⇒ KOTRA, 「(수출24)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소요비용 지원	1회 30만원 소요 (횟수제한/비용한도 없음)
2	[선택]	해외 대체 공급망 현지 조사 지원 ⇒ 원부자재 해외 전시박람회 참관, 해외 대체공급처 공장 실사 비용(항공료, 숙박비, 전시회 등록비)	공무원 여비규정 근거 실비 지급 (횟수제한/비용한도 없음)
3		대체 공급처(국외기업) 신용조사 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소요비용	1건 5만원 소요 (횟수제한/비용한도 없음)
4		대체 원부자재 샘플 수입비 지원 ⇒ 대체 원부자재의 샘플 수입비(물류비)	횟수제한 없음 / 비용한도 150만원
5		국내 수입요건, 성능검사, 인증 취득 지원 ⇒ 대체 원부자재의 수입 요건 및 성능 검사, 인증 취득 비용	횟수제한 없음 / 비용한도 150만원
6		수출기업AEO 공인 비용 지원 ⇒ 신청기업의 AEO 공인인증 비용 일부	최대 1회 / 비용한도 150만원

2. 사업진행 프로세스



① (사업 신청) 신청서 및 필수/가점 제출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신청

② (선정평가 및 최종 선정기업 공고)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신청서, 사업비 활용계획서, 기타증빙서류 등)를 기반으로 1차 정량평가(자격 유효성, 가점 등)를 실시하고,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2차 정성평가(사업 선정 당위성, 계획의 당위성, 책임성 등)를 실시하여 신청기업 다면 검토 후 최종 기업 선정 공고 ※ 선정기준은 [별첨1. 선정 평가표] 참고

③ (사업추진 매뉴얼 ZOOM 교육) 최종 선정기업 대상 사업수행 매뉴얼 배포 및 사업 추진 프로세스와 질의응답을 ZOOM 교육 통해 실시

- ④ (사업 수행 및 관리) 선정기업은 기제출한 [사업비 활용계획서] 기반으로 사업기간 내 선지출하여 추진하며, 활용계획 수정 필요 시 수정계획서를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에 제출 후 승인받아 진행
- ⑤ (진척도 현장점검) 사업비 활용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확인 및 사업비 소진 등 진척도 확인을 위한 기업 방문 점검 실시
- ⑥ (사업비 중간환급 신청/지급) 6월과 9월 등 2차에 걸친 중간 사업비 환급 신청을 진행. 조기완료한 사업은 증빙서류 검토 후 사업비 환급 실시를 하여 기업의 자금 순환 부담 해소
- ⑦ (완료보고서 제출 및 최종 환급)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11월 최종 지원금 환급 실시
- ⑧ (만족도 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3. 신청 및 발표 일정

가. 신청기간 : 2월 24일(월) ~ 3월 17일(월) 16시

나. 최종 선정기업 발표 : 3월 3주(예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이메일(rlawns0705@gsmba.kr)로 서류 제출 신청

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① [서식1] 참여신청서 1부 ② [서식2] 사업비 활용계획서 1부 ③ [서식3] 기지원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1부 ④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⑤ (본점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2024년 수출실적확인서*
선택 제출 (해당되는 경우 제출)	- 외국어 홈페이지 캡처본 1부, 외국어 카탈로그 1부 - 경기도 소재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해외규격인증서(별첨2 해당건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사본 -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법인소유 특허권자만 인정) - 공공기관인증서(별첨1 선정평가표 참고) 사본

※ 필수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 시 신청기업에서 제외

※ 필수 제출 ⑥번 2024년 수출실적확인서는 하단 참조

<참조> ⑥번 2024년 수출실적확인서

■ 필수제출 ⑥번 2024년 수출실적확인서는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만 인정되며,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제출 필요

■ 발급방법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①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s://www.bandtrass.or.kr/> 접속 → 수출입실적 증명서 서비스 바로가기 →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 주문’ 버튼 클릭 후 프린트

5. 기타

가. 신청서 허위 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서식5]사업포기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서식5]사업포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2년간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센터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인명 사망사고, 중대한 기계파손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사유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 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라. 사업진행 중 지원금(기업당 250만원) 환급대상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되며, 부가세는 선정기업의 자부담함.

※ 사업 총진행비 = 사업지원금 + 부가세

※ 사업진행비 중 발생하는 부가세는 기업 자체적으로 부가세 환급 실시
마. 문의처 :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김준 주임보

(☎031-8064-1383 / rlawns0705@gsmba.kr)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2025년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계				100
계량 평가 (50)	기업기본 (32)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2.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2.5)	5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9
		해외 규격인증 획득 ¹⁾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 ²⁾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주 4.5일제 시행 경기도 인증기업(2), 면접수당 지급 기업(1), 기업 RE100 참여기업(2)	10 (최대)
	수출실적 (13)	전년도(2024년) 수출금액 ※ 전년도('24)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 시 전전년도('23) 수출증명서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13
참가실적 (5)	최근 3년(2023~2025)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참가여부	2회 이상(5), 1회(3), 없음(1)	5	
정성 평가 (50)	지원대상 기업 및 품목 적합 여부 (50)	지원 대상 적합도, 사업비 활용 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기업의 책임성, 기대효과 등 *공고 [서식2] 사업비 활용계획 서 기준으로 정성평가 실시	(사업 선정의 당위성) - 신청기업의 사업 선정의 이유 및 그 당위성 ※ 기업의 원부자재 대체공급망 발굴 필요성 및 현재 기업이 당면한 현실 등	15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 사업비 활용 계획을 통한 사업추진 현실성 및 신청내용 (항목, 금액 등)의 적정성 ※ 항목 당 신청금액의 적정성, 신청사업비 소진 가능성 등	15
			(사업 수행기업으로서의 책임성) -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 달성을 위한 책임감 및 의지	10
			(사업 기대효과) - 지원사업 이후 기업의 대체공급망 안정화 기대효과 및 사회·경제적 효과 등	10
참가제한 및 감점사항		- 공정위 고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종건기업 및 공기업 - 과거 경기도 및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사업 참가 당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일 원부자재 품목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	탈락	
		-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하기 해당 통상지원사업 중 3회 초과 수혜를 받은 기업 (대상 : 온라인플랫폼 마케팅지원, 탄소국경세 대응 컨설팅, 비관세장벽 대응 인증지원 및 수출상담회, 글로벌공급망 대응 대체공급망 발굴 및 관세환급, 통상환경조사단)	4회 (-5점), 5회 이상 (-10점)	
		- 전년도 동일 사업(24년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 기수혜 기업	-1	

1)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387개 [별첨 2] 참고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 대상(총 387개)

※ '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업 지원 대상 준용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미국 (71)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T (미국운수성)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Green Seal (친환경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WH-ETL (Warnock Hersey Mark)
	Proposition 65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
유럽 (30)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2)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 제에 대한 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CR R4404 (유럽유아용카시트안전규정)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독일 (14)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GL (독일선급협회)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영국 (11)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UKCA(UK Conformity Assessment) (영국적합성평가)	SCPN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	-
일본 (27)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 PVM	JPAL → PMDA(일본의료기기)	JHOSPA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일본태양광인증)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러시아 (10)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	-
우크라이나 (1)	Uni Cert (우크라이나 적합성인증)	-	-
말레이시아 (3)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
멕시코 (3)	COFETEL →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칠레 (1)	SEC(칠레에너지관리국)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대만 (6)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NCC (대만 통신기기인증)
태국(2)	태국 식약청	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2)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터키(1)	TSE (터키 강제인증)	-	-
싱가포르 (5)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PSB → CPS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12)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DCG인도식약청	IRS (인도선급인증)
	IBR (인도 보일러 규정)	RDSO (인도 철도인증)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인도네시아 (3)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30)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CPA (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NMPA(구.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중국위생허가 포함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V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GB-Test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 증	중화인민공화국 비료임시등록증
	중국 유기농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EL (China Enegy Label, 중국 에너지라벨 효율등급)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두바이(1)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캐나다 (8)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CSA (캐나다표준규격)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NRCan (캐나다 에너지효율인증)	-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폴란드 (2)	B mark	NTA (폴란드 건축자재인증)	-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필리핀 (3)	ERC	PFD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ICC (필리핀 표준규격인증)
라오스(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베트남 (8)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VR (베트남선급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품화장품등록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VNEEP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호주 (12)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정밀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 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	-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통신위원회)	-	-
이란(2)	ISIRI (이란 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아랍에미레이 트(2)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ECAS (아랍에미레이트 강제인증)	-
이스라엘 (1)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국제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 제품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80)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SIG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 보목적의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 장재 승인 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FSC (국제산림관리협회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 인증)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 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구격)	NON GMO
	OCS (유기농섬유인증)	OK compost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DI (배관,배수 인증)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CC (중동적합성 마크)	IHE Connectathon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ASC (Ag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UN 38.3 (리튬이차전지 운송안전성시험)	FIDO (생체인증)	Wi-Fi Certified (Wi-Fi 상호운용성인증)
	ZDHC (유해화학물질제로배출협회) (Zero Discharge Hazardous Chemicals)	RCS (Recycled Claims Standard)	Gluten Free Programs (글루텐안전인증)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RWS (Responsible Wool Standard)	-

[별첨 3]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

■ 「2025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 ‘해외 대체 공급망 현지 조사 지원’ 항목

- 내용 : 해외 원부자재 관련 전시박람회 참가, 혹은 대체 공급처 공장 실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 여비 지원
- 활용방법 : 동 항목은 외유성 및 목적에 맞지 않은 출장비 지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출장 전 반드시 출장 계획서(양식 별도 제공 예정)를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에 제출, 사전 승인 후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항공료, 숙박비, 전시 등록비
- 지원기준 : 선정기업 소속 인원만 가능하며, 하기 기준(공무원 여비규정) 따라 지급

구분	산정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국외여비	□ 국외여비 세부기준 (단위: 미 달러화(\$))			
	항공료	숙박비 (비고 참조)		전시등록비
	이코노미석 실비 (인천→출장지 직항)	가	실비(상한액: 176)	실비
		나	실비(상한액: 137)	
		다	실비(상한액: 106)	
		라	실비(상한액: 81)	

<비고> 숙박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오세아니아: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 2) 남·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3)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3) 유럽: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오세아니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 4) 중동아프리카: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